

의안번호	2208847
의 퇴 인	허성무 의원
회 답 일	2025. 3. 17.
추계번호	25C1495

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법률 제20415호 안 제18조의2 (임종과정지원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임종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법률 제20415호 안 제18조의2 (임종과정지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임종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0415호 (2026.3.27. 시행 예정) 제1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「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 사업을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
 - 「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호스피스 사업이란, 암, 후천성면역결핍증,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, 만성 간경화 등에 해당하는 질환 때문에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

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, 심리사회적,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함

- 개정안 시행 시 「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호스피스 사업 외에도 타법 및 조례에 따른 임종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□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임종과정 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사업 확대 및 신규 사업 추진 여부를 알 수 없음

- 개정안은 확대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향후 개정안 시행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정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할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알 수 없음

□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